안양시 훈령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일괄정비 규정

제정 2020. 1. 31 훈령 제7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 훈령 중 제명 띄어쓰기와 목적규정에 둔 약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양시 공무원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 규정」의 개정) 안양시 공무원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에게”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3조(「안양시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의 개정) 안양시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을 “안양시 부동산 권리의무증서 보관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4조(「안양시시설공사검사업무규정」의 개정) 안양시시설공사검사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시설공사검사업무규정”을 “안양시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으로 한다.

제5조(「안양시과·소의업무지도규정」의 개정) 안양시과·소의업무지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과·소의업무지도규정”을 “안양시 과·소의 업무 지도 규정”으로 한다.

제6조(「안양시공무원휴양시설이용규정」의 개정) 안양시공무원휴양시설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공무원휴양시설이용규정”을 “안양시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콘도미니움(이하 “콘도”라 한다)”을 “콘도미니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콘도이용”을 “콘도미니움(이하 “콘도”라 한다) 이

용”으로 한다.

제7조(「안양시문서발간실운영규정」의 개정) 안양시문서발간실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문서발간실운영규정”을 “안양시 문서발간실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안양시문서발간실(이하 “발간실”이라 한다)”를 “안양시 문서발간실”이라 한다.

제3조 중 “발간실”을 “안양시 문서발간실(이하 “발간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안양시시민헌장규정」의 개정) 안양시시민헌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시민헌장규정”을 “안양시 시민헌장 규정”으로 한다.

제9조(「안양시민방공경보단말운영규정」의 개정) 안양시민방공경보단말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민방공경보단말운영규정”을 “안양시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0조(「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규정」의 개정)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규정”을 “안양시 컴퓨터통신민원 사무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11조(「안양시민원종합접수전용전화운영규정」의 개정) 안양시민원종합접수전용전화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민원종합접수전용전화운영규정”을 “안양시 민원종합접수 전용전화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2조(「안양시다목적복지회관운영규정」의 개정) 안양시다목적복지회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다목적복지회관운영규정”을 “안양시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복지회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회관”을 “다목적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안양시가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에관한규정」의 개정) 안양시가로

・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가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에관한규정”을 “안양시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안양시상수도급수관리인지정에관한규정」의 개정) 안양시상수도급수관리인지정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상수도급수관리인지정에관한규정”을 “안양시 상수도 급수관리인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급수관리인(이하 “급수관리인”이라 한다)”을 “급수관리인”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급수관리인”을 “안양시 상수도공용급수장치의 급수관리인(이하 “급수관리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안양시골재채취허가구역등의감시규정」의 개정) 안양시골재채취허가구역등의감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골재채취허가구역등의감시규정”을 “안양시 골재채취 허가구역 등의 감시 규정”으로 한다.

제16조(「안양시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의 개정) 안양시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을 “안양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